

별첨 #8

재취업심사 관련 세부사항

□ 관련규정

- 다음 규정에 의거, 서울교통공사 재직 경력(모든 직급)이 있는 퇴직자·퇴직 예정자는 입사지원 시 '출자회사 재취업 심사표'를 제출하여야 함(제출방법 : 입사지원 페이지에서 별첨#9, 별첨#10 파일 업로드)

서울교통공사 출자회사관리규정

제8조의2(재취업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공사 사장은 공사 퇴직자 또는 퇴직예정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출자회사에 재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의 공정성,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재취업심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재취업 적격 여부 등을 심의·의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심사대상자
2. 출자회사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자
3. 공사 재직 시 4급 이하로 퇴직한 자 또는 퇴직 예정자(명예승진 제외)
4. 단순노무 종사자 및 기간제로 출자회사에 취업하는 경우
5. 제8조 제3항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받은 자

② 제1항의 재취업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8조의3(성비위자 등 취업제한) 공사 사장은 공사 퇴직자 또는 퇴직예정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자회사 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공사 재직 중 성비위로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
2. 공사 재직 중 금품·향응수수료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

서울교통공사 출자회사재취업심사운영예규

제12조(심사 기준) ① 위원회는 공사 퇴직자 또는 퇴직예정자의 재취업일이 퇴직(예정)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, 퇴직 전 5년 간 담당하였던 업무와 출자회사에서 담당할 업무 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정도로 '밀접한 업무 관련성'이 있는 경우 출자회사 재취업을 제한한다.

□ '밀접한 업무 관련성' 판단기준

- 재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5년 동안 담당한 업무가 취업예정 출자회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
(서울교통공사 출자회사재취업심사운영예규 별지 제2호)

1. 공사,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·검사·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 - A. 기본사업계획 수립, 규격 등 검토
 - B. 제안서 검토, 평가, 입찰 및 계약체결
 - C. 계약에 따른 사업관리(감독, 검사, 검수 등)
 - D. 대금 지급, 후속 조치(평가, 감사 등) 등
2. 법령, 공사 규정에 근거하여 출자회사를 직접 감독하는 업무
 - E. 검사, 감독 등 계획수립
 - F. 검사반 등 편성 및 참여
 - G. 심리, 처분 검토, 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등
3. 출자회사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·심판과 관계되는 업무
 - H. 출자회사와 그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의 수사, 조세, 특허, 공정거래 등에 관련된 사건의 심리, 심판, 심결 등 담당
4. 생산방식·규격·격리 등에 대한 검사·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 - I. 검사, 감사계획 등의 수립
 - J. 검사, 감사반 편성 및 참여
 - K. 결과처분 검토 및 결과처분 통보, 후속 조치 등
5.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출자회사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L. 정책 등의 수립, 조정, 시행, 평가, 감사, 후속 조치, 제도개선 반영 등과 직접 관련된 업무처리
 - M. 정책, 사업 등의 검토, 결재 또는 안건검토, 심의 등을 위한 회의 참석 등 의사결정 관여
 - N. 검토의견 제출 등 업무처리 협조, 정책건의, 반영, 민원처리 등 다양한 형식, 모습으로 특정 출자회사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
6. 기타 위원회에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업무
 - O. 위원회가 별도 수립한 기준이 있는 경우